

운영규정의 개요

2024. 1. 1.

I. 기본정보

기관명(법인명)	기아대책노인복지센터(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)	대표자(센터장)	서경석(권혜민)
설치일자(지정일자)	2005. 6. 7. (2008. 6. 16)	급여종류	방문요양
소재지	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90-1, 2층		
전화	042)254-0841	FAX	042)254-0840
이용대상	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·뇌혈관성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(1~5등급)을 판정받은 자(장기요양 인정자)로 한다.		

II.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

1. 이용정원 :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.
2. 이용자 모집방법 : 오프라인(지역 내 모임-협회 및 만두레 등의 활동, 요양보호사교육원 연계, 행정복지센터 연계, 홍보물-윤전달력 등, 서비스대상자 정기모니터링, 운영위원회, 요양보호사 회의 및 교육, 자원 봉사자 및 후원자, 기관블로그, SNS(카카오톡, 모금SNS)를 통한 홍보

III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계약목적	요양보호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 하에 정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.
급여계약	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체결을 한다.
계약기간	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②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(계약변경)을 원칙으로 한다.
계약의 해제	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,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 악화로 병원 장기 입원이나 시설 입소하는 경우 ③ 수급자의 등급이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⑥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,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⑦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6회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
그 밖의 비용부담액	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하는 교통비 등은 수급자(또는 보호자)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② 계약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(또는 보호자)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신원인수인 권리	①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 ②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가 있다.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 ④ 수급자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신원인수인 의무	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자료를 시설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.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 ③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, 입·퇴원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배상책임 보험	센터는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한다.

IV.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

운영규정 참조	사무실내(게시판 옆 전면책장) 비치되어 있음.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